

증권담보용자거래설명서 신규조문대비표(2023.09.27 개정)

구분	현 재	개정(안)	비 고
7. 증권담보용자의 제한	2)증권담보용자 신청 제한 ① 신용거래 제한정보자, 기타부실거래자, 압류계좌, 담보유지비율미달계좌, 미수유가증권 발생계좌인 경우 용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증권담보용자 신청 제한 ① 신용거래 제한정보자, 기타부실거래자, 압류계좌, 담보유지비율미달계좌, 미수유가증권 발생계좌인 경우 용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b>법인 계좌 중 비영리법인계좌는 담보용자 약정이 불가합니다.</b>	증권담보 신청제한 추가
9. 증권담보용자의 담보 관리	4) 담보평가 특례 라) <신설>	라) 단, 담보증권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조치, 불공정거래의 우려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전에 홈페이지에 안내한 종목 등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보제외기준 추가
9. 증권담보용자의 담보 관리	8) 회사는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한 경우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내용증명우편 또는 전화 등 (전화 방법은 자동음성안내 전화, 유선전화 등으로 합니다) 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신용공여유형별로 정해진 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회사가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분합니다. 반대매매를 통한	8) 회사는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한 경우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내용증명우편 또는 전화 등 (전화 방법은 자동음성안내 전화, 유선전화 등으로 합니다) 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신용공여유형별로 정해진 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회사가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및 <b>정규장, 시간외거래시장에</b>	임의상환 시간변경

	<p>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게 임의상환수량을 산정합니다. (A,B,C 군은 전일종가의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당 종목군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p>	<p><b>참여하는 호</b>로 처분합니다.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게 임의상환수량을 산정합니다. (A,B,C 군은 전일종가의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당 종목군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p>	
<p>9. 증권담보유자의 담보 관리</p>	<p>&lt;신설&gt;</p>	<p><b>12) 고객 담보증권 중 E, F 종목군의 담보평가금액의 합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담보유지비율을 알림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고객 통지 후 적용합니다</b></p>	<p>담보유지비율 적용기준 추가</p>